

<보험개발원 생보 제2004-0074호(2004.05.03)>

(1)

(1)

1

1
 (請約)
 (承諾)
 “ ”, “ ”, “ ”
) 가 (가
 , , ,
) . 1 (“
 ”) , (“
 (“ ”) , (“
) 30
 ,
 30
 가 .
 가 1
 , (“ ”) +1%
 .
 가 1

2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 가 ()

, 가

가 1

가 () 2
10

)
3

2

1. , 가
 , 가
 가

2. 1

가

2

4

가

1.

2. 가
 (心神喪失者) (心神
 薄弱者)

5

1.
2.
3.
4. 가
5. (" ")
6.
 가 1
1

 가 1 4 가

 , 가
 26 ()
1
 가 1 5
 가
 가

6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7

 가
 가
 가

8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

9 1
(1 가
,
1) 가
1
1 .(1
“ ” , (,
)
90

가 1 가

2 가

1. 30 ()
가
2. 29 ()
가

가

가

가

10 2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11

-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0조(약관대출)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

으로 하여 제2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2

가 2

, 3

가

1

가

3

1

, 가

()

15

1

2

가

(

)

가

15

()

1

) 1

26 (

13

-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30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1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3 ()

14 “ ”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폐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5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6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7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백혈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혈병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백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8 “ ”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식중독”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식중독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식중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19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 정한 행위(이하 “수술”이라 합니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濟)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20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재해골절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② 재해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21

이 계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 재해분류 표(별표 11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22

가

가

(1 " ")

1. 가

:

2. 가
 가

(12) 1 6
 가 :

3. 가
(1) :

4.

(1) :
5. (13) ") 가 (

(1) :
6. 가
, " ", ,
(1) :

7. 가 : .

23

1 3 가
 가

22 () 7
 가

, ,
27 () 2

가

1 22 () 2
 180
 180

3
2 ()
가 ()
)
 22 () 2
 가

가

2
 가

2 - 1 - 12

가
가

5
가 가
6 가
 (後段)

1.

2. 1
 가
 5 7
 1 가

22 () 6
 “
 “
 “
 (,)
) 가
 “ “
 “ “
 “ 가

22 () 6

가

, “ ” , “ ”

22 () 5

가

2가 () 가
1 ,

24

가

가

(解止)

1. 가 , 가 () 2

1 가

2. 가 ,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25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2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6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27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28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4

29

(
)
“ ” , “ ”
) . 3 ()

30

가 29 (

)

가

가

1. 가

2. 가

1

가

2 (

1)

3. 가

(

(

가

4.)
 (“ ”
)가

 1 가
 , 가
 ,

 1

 “
 ”

 1

 ,
 가
29 ()
 가 1

31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료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
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32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33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수익자를 제2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
7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34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
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
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連帶)로 합니다.

35

수익자는 제2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6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단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7

36 () ,

3

10

22 () 1

7 가
가

, 1

“
”(2) .
,
) 1
,

가
1

가
,

가
가
,

가
,

가
,

가
,

3
“ 가 ” “ 3
”
,

1 5
,

가

38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2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7호에 의한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9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40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41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3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44 가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5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4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47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 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 축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전액
재해 장해 급여금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가 “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1</p> <p style="text-align: center;">6</p> <p style="text-align: center;">가</p>	<p style="text-align: center;">1 : 5,000 2 : 2,500 3 : 1,500 4 : 1,000 5 : 500 6 : 300</p>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1 : 2,500 2 : 1,250 3 : 750 4 : 500 5 : 250 6 : 150</p>

급부 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식중독 치료 자금	가 “ ”	1 10
재해 골절 자금	가 “ ”	1 10
수술 자금	“ ” ”가 (1)	1 : 30 2 : 70 3 : 150
암 치료 자금	가 “ ” (1) 가 “ ” (1)	3,000 (, 2) 가 1,500 1,000 (, 2) 가 500

급부 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 치료 자금	가	100 (, 2)
	”	가 50 (1))
	가	200 (, 2)
사망 보험금	”	가 100 (1))
	가	100 (, 2)
	”	가 50 (1))
사망 보험금	가	가 15 :
		가 15 사망하였을 경 우 : 2,000만원 지급

) 1.

가

2. 1 3 가 가

,

3. (, ,
90)

4. “ ” “ ”

5. “ ” “ ”
“ ”

6. “ ”

1 가

7. 2가 (1) 가
1 ,

【 별표 2 】

(37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재해장해급여금, 식중독치료자금, 재해골절자금, 수술자금, 암치료자금, 사망보험금(제22조 제2호 내지 제7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만기 축하금(제22조 제1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해약 환급금 (제26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 의 50% 1년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 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 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
효(제28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
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2 - 2 - 1

(1)

1

1

가 (請約) 가 (承諾)
 가 .(.(.(.(.(.(
 “ ” , “ ” , “ ” ,
 “ ” , “ ” , “ ” , “ ” ,
))))))
(解止)
 가
 가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3

 가
 가
, 가
 12 () 1

4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2 ()

6

7

1 12 () 1

8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을 준

용합니다.

3 ()

9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13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가

(1 “ ”)

1.

가

4

2.

가 15

:

11

10 () 1
1 120

가

1 2
 2

180

가

2

가
가

가

10 () 2
 가

27 () 2
 ()
 (" ")

가

12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3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4

13 ()

,

3 ,

, ,

10

1

" "(2)

5

15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 명칭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입원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에게 질병 또는 재해 가 발생하여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2만원 지급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만15세 미만에 사 망하였을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 보험료의 전액 지급

- 주) 1. 보험료 납입면제는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14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입원급여금, 사망보험금 (제10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 이율
해약환급금 (제12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 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 예정이율 의 50% 1년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 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 간	약관대출 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2 - 3 - 1

(1)

1

1

가 (請約)	가 (承諾)
“ ” , “ ” ,	.(” ” ,
(解止)	
가	가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3

가	가
, 가	
15 () 1	

4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2

()

6

7

1
)
1

15 (

8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을 준

용합니다.

3 ()

9 “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다발성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질환분류표(별표 1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다발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10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상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특정상병분류표(별표 1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상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11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다발성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상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가
(1 " ")

1. 가 4

:

2. 가

3. 가 15

:

14

13 () 1
1

120

가
2 1
2

180

가

2

가

13 () 3

가

27 () 2
(" ") 9

가

15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6

-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통원

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7

16 ()

,

,

10

1

“()” 2

5

18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 명칭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다발성 질환 입원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다발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 을 경우	3일초과 1일당 2만원지급
특정상병 통원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특정상병”으로 진 단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 하였을 경우	통원치료 1회당 1만원지급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만 15세 미만에 사 망하였을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 보험료의 전액 지급

- 주) 1. 보험료 납입면제는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2. 다발성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20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17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입원급여금, 통원자금, 사망보험금 (제1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 이율
해약환급금 (제15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 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 예정이율 의 50% 1년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 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 간	약관대출 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

3
(KCD : 2002-1 , 2003. 1. 1)

1.	,	C00 C14
2.		C15 C26
3.	가	C30 C39
4.		C40 C41
5.		C43
6.		C45 C49
7.		C50
8.		C51 C58
9.		C60 C63
10.		C64 C68
11.	,	C69 C72
12.		C73 C75
13.	,	C76 C80
14.	,	C81 C96
15.	()	C97

【 별표 4 】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 별표 5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D45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별표 6 】

백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 통계청 고시 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2. 림프 백혈병	C91
3. 골수성 백혈병	C92
4. 단핵구성 백혈병	C93
5.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6.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7 】

약관에 규정하는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A02
2. 이질	A03
3. 기타 세균성 창자 감염	A04
4. 기타 세균성 식중독	A05
5. 아메바증	A06
6. 기타 원충성 창자 질환	A07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창자 감염	A08
8.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T61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T62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식중독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식중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식중독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8 】

- 「수술분류표」 상의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 고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술분류표」 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 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 로 시술한 경우 「수술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수술의 종류	수술종류 분류(종)
○ 피부·유방의 수술(皮膚·乳房의 手術)	
1. 식피술(植皮術) (25㎠ 미만은 제외함)	2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2
○ 근골의 수술(筋骨의 手術)[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3. 골이식술(骨移植術)	2
4. 골수염·골결핵수술(骨髓炎·骨結核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2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비중격(鼻骨·鼻中隔)은 제외함]	2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彎曲症手術)은 제외함]	1
7. 상악골·하악골·악관절 관혈수술 (上顎骨·下顎骨·頸關節 觀血手術) [치, 치육(齒, 齒肉)의 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2
8. 척추·골반 관혈수술(脊椎·骨盤觀血手術)	2
9. 쇄골·견갑골·늑골·흉골 관혈수술 (鎖骨·肩胛骨·肋骨·胸骨 觀血手術)	1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2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골·관절(骨·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2
12. 사지골·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
13. 근·건·인대 관혈수술 (筋·腱·韌帶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근염·결절종·점액종수술 (筋炎·結節腫·粘液腫手術)은 제외함]	1

수술의 종류	수술종류 분류(종)
○ 호흡기 · 흉부의 수술(呼吸器·胸部의 手術)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2
16. 기관 · 기관지 · 폐 · 흉막수술(氣管 · 氣管支 · 肺 · 胸膜手術)[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2
17. 흉곽형성술(胸廓形成術)	2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3
○ 순환기 · 비의 수술(循環期 · 脾의 手術)	
19. 관혈적 혈관 형성술(觀血的 血管 形成術) [혈액투석 용(血液透析用)와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
20. 정맥류근본수술(靜脈瘤根本手術)	1
21. 대동맥 · 대정맥 · 폐동맥 · 관동맥수술 (大動脈 · 大靜脈 · 肺動脈 · 冠動脈手術) [개흉 · 개복술(開胸 ·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
22. 심막절개 · 봉합술(心膜切開 · 縫合術)	2
23. 직시하심장내 수술(直視下心臟內 手術)	3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入術)	2
25. 비적제술(脾摘除術)	2
○ 소화기의 수술(消化器의 手術)	
26. 이하선종양 적출술(耳下腺腫瘍 摘出術)	2
27. 악하선종양 적출술(頸下腺腫瘍 摘出術)	1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3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
30. 기타의 위 · 식도수술(胃 · 食道手術) [개흉 · 개복술(開胸 ·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2
32. 간장 · 담낭 · 담도 · 췌장 관혈수술(肝臟 · 膽囊 · 膽道 · 腎臟 觀血手術)	2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1
34. 충수절제술 ·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 盲腸縫縮術)	1
35. 직장탈 근본수술(直腸脫 根本手術)	2
36. 기타의 장 · 장간막 수술(腸 · 腸間膜 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
37. 치루 · 탈항 · 치핵 근본수술(痔瘻 · 脱肛 · 痔核 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치치 ·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1

수술의 종류	수술종류 분류(종)
○ 뇌·성기의 수술(尿·性器의 手術)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
39. 신장·신우·뇨관·방광 관혈수술 (腎臟·腎盂·尿管·膀胱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
40. 뇌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	2
41. 뇌루폐쇄 관혈수술(尿瘻閉鎖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3
43. 고환·부고환·정관·정색·정낭·전립선 수술 (睾丸·副睾丸·精管·精索·精囊·前立腺 手術)	2
44.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水腫 根本手術)	1
45. 자궁광범 전적제술(子宮廣氾 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 등의 자궁전적제술 (子宮全摘除術)은 제외함]	3
46. 자궁경관형성술·자궁경관봉축술(子宮經管形成術 ·子宮經管縫縮術)	1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妊娠手術)	2
49. 자궁탈·질탈수술(子宮脫·臍脫手術)	2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 술·인공임신증절술(子宮頸管 Polyp 切除術·人 工妊娠中絕術)은 제외함]	2
51. 난관·난소 관혈수술(卵管·卵巢 觀血手術) [경질 적조작(經腔的操作)은 제외함]	2
52. 기타의 난관·난소수술(卵管·卵巢手術)	1
○ 내분비기의 수술(內分泌器의 手術)	
53. 뇌하수체종양적제술(腦下垂體腫瘍摘除術)	3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2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2
○ 신경의 수술(神經의 手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3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형성술·이식술· 절제술·감압술·개방술·염제술(形成術·移植 術·切除術·減壓術·開放術·捻除術)]	2

수술의 종류	수술종류 분류(종)
58. 관혈적 척수종양 적출수술(觀血的 脊髓腫瘍 摘出手術)	3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2
○ 감각기 · 시기의 수술(感覺器 · 視器의 手術)	
60. 안검하수증 수술(眼瞼下垂症 手術)	1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1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1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1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1
65. 관혈적 전방 · 홍채 · 초자체 · 안와내 이물제거술(觀血的 前方 · 虹彩 · 硝子體 · 眼窩內 異物除去術)	1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虹彩前後癒着剝離術)	1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2
68. 백내장 ·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 水晶體 觀血手術)	2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1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1
71. Laser ·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72. 안구적제술 · 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 · 組織充填術)	2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2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1
○ 감각기 · 청기의 수술(感覺器 · 聽器의 手術)	
75. 관혈적 고막 · 고실형성술(觀血的 鼓膜 · 鼓室形成術)	2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1
77. 중이 근본수술(中耳 根本手術)	2
78.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2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摘出術)	3
○ 악성신생물의 수술(惡性新生生物의 手術)	
80. 악성신생물 근치수술(惡性新生生物 根治手術)	3
81. 악성신생물 온열豆畠(惡性新生生物 溫熱療法)[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82. 기타의 악성신생물 수술(惡性新生生物手術)	2

수술의 종류	수술종류 분류(종)
<p>○ 상기 이외의 수술(上記 以外의 手術)</p> <p>83.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2</p> <p>84.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2</p> <p>85.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1</p> <p>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p> <p>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두·흉부·복부장기 수술(腦·喉頭·胸部·腹部臟器 手術) [검사·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에 급여를 한도로 함] 1</p>	
<p>○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生物根治 放射線照射)</p> <p>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p>	

※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성형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적 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개두술

“개두술”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3. 개흉술

“개흉술”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개복술

“개복술”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심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별표 9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 운수사고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물에 빠짐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분류항목	분류번호
23.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5

가

(주) 다음 사항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2.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4.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7. "법적 개입" 중 처형(Y35.5)

【 별표 10 】**(骨折)**

재해골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2. 목의 골절	S12
3.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4.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5.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6. 아래팔의 골절	S52
7.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8.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1.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2.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3.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4.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11 】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 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 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 별표 12 】

등급	신체장애
제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도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도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등급	신체장애
제3급	<p>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때</p>
제4급	<p>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p>

등급	신체장해
제4급	<p>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p> <p>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p>
제5급	<p>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p> <p>2.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5급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등급분류 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

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순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순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 굴절장애, 안구운동 장해, 조절장애, 복시 등을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ㅌ),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

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
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
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
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
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
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즉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
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
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

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frac{1}{2}$ 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Σ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비례치)이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 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

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2}{3}$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frac{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frac{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합물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합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합물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합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을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 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 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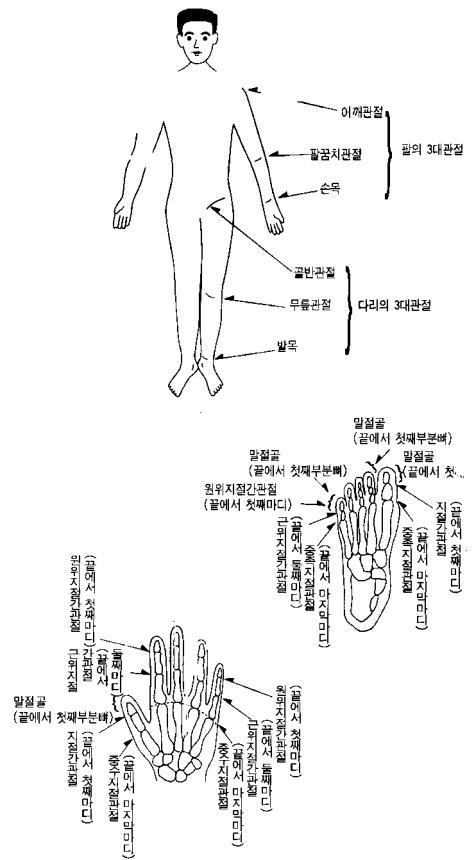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

정할 수 없을 경우

-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화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체 부위도



【 별표 13 】

*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함.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I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II . 신생물	C00~D48
III .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D89
IV .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0
VII .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VIII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H59
VIII . 귀 및 꼬지돌기의 질환	H60~H95
IX . 순환기계통의 질환	I00~I99
X . 호흡기계통의 질환	J00~J99
X I . 소화기계통의 질환	K00~K93
X II .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L00~L99
X III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X IV .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N00~N99
X V .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X VI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X VIII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R00~R99
X IX .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X X .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Y98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 제재에 의한 사고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정신장해(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아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별표 14 】

4
(KCD : 2002-1 , 2003. 1. 1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A00-A09
2.		A15-A19
3.		A20-A28
4.		A30-A44,A46, A48,A49
5.		A65-A69
6.		A70-A71,A74
7.		A75,A77-A79
8.		A80-A89
9.		A90-A96,A98, A99
10.	가	B00-B09
11.		B15-B19
12.		B25-B27,B30, B33,B34
13.		B50-B60,B64
14.		B65-B83
15.	,	B85-B89
16.		B90-B94
17.		B99
18.		G00-G09
19.	,	I26-I52
20.		J12-J18
21.		J45-J46
22.		K35-K38
23.		K40-K46, K56

5

【 별표 15 】

특정상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중 · 콜레라 ·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 기타 살모넬라 감염 · 이질 · 기타 세균성 식중독 · 폐스트 · 디프테리아 · 발진티푸스 · 황열 · 마마	A00 A01 A02 A03 A05 A20 A36 A75 A95 B03
○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Y98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